

화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공영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공영애 의원)

가.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나.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조례안은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화성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관내 공공심야약국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안전 사용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서 의료취약지를 우선적으로 분포하도록 지정하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현장에서의 인력 수급 문제와 공공 심야약국 현장의 재정적 이익을 고려하여 예산범위에서 운용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성 보다는 공중보건을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보건정책과장 공준식)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영역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분리·개편하여 특화된 전문센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발달 지원
- 우리시 인구의 22.8%를 차지하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등의 연계가 가능한 체계적인 전문기관이 필요함
-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 및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9호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의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 위탁시설명: 화성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 212 내 마인드스텝센터 1층
- 위탁사무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센터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등록·관리사업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정보제공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의 기획 및 자원 제공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10조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위탁계획

- 민간위탁 기간: 2년(2022. 7. 1. ~ 2024. 6. 30.)
 - ※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사
- 수탁기관 선정주체: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소요예산액

(단위: 천원)

| 구분 | 합계 | 국비(26.7%) | 도비(8.9%) | 시비(64.4%) |
|-----|---------|-----------|----------|-----------|
| 합 계 | 399,755 | 106,750 | 35,474 | 257,531 |
| 운영비 | 119,755 | 22,750 | 13,074 | 83,931 |
| 인건비 | 280,000 | 84,000 | 22,400 | 173,600 |

나. 인력 및 시설 구성

- 운영인력: 총10명 (센터장 1명, 직원 9명)
 - 기존 인력 4명 재배치, 신규인력 증원(6명)
- 시설 구성: 250㎡(약 75.6평)

| 계 | 사무실 | 회의실 | 프로그램실 | 상담실 | 대기실 |
|---|-----|-----|-------|-----|-----|
| 9 | 1 | 1 | 4 | 2 | 1 |

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은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정신건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이 전문성, 안전성,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기관·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는 점을 근거로 법적인 면에서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화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범위 및 대상자 증가로 인해 성인과 다른 특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위한 업무를 분리·개편하여 특화된 전문센터를 마련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 주요 위탁사무로는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사업, 상담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행동 특성문제 조기발견, 고위험군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등임.
- 검토결과, 우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사회, 문화,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도 급격히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장 및 인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내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화성 아동상담소,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화성가족통합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중복 사업을 지양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김도근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도근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분야의 사람책이 등록되는 화성시 사람책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세대 간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 및 독서 붐업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람책 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람책의 신청·등록 등과 등록의 해제 및 대출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조례안은 새로운 방식의 휴먼라이브러리로 시민들과 사람책이 모여 생각과 고민을 펼치는 인문공간으로 사람을 책으로 선정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보듯이 사람책을 대출하여 사람책의 지식과 경험 등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일, 삶의 방향을 찾으면서 지역사회에 새로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사람책 도서관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사람책 신청·등록 등과 등록의 해제 및 대출, 사람책 도서관 시스템 구축·운영, 자원봉사활동 원칙 및 지원 등 사람책 도서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시민들이 사람책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이야기 해주고 전문지식과 지혜를 다양한 사회 구성원에게 나누며, 사람책을 통해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재능기부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시행 전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홍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사람책이 등록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기획에서부터 섭외, 진행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면서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노인복지과장 지 현)

가. 제안이유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
-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 추진 필요성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간법인을 재선정하여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내용

-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사업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부대시설 및 작업장 포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수탁법인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및 사업승계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시설, 위치도)

- 시설명: 노인일자리지원기관(화성시니어클럽)
- 소재지: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38
- 시설규모: 지하1층 ~ 지상3층(부지면적 1,575㎡, 연면적 2,237㎡)
- 최초 지정일: 2010. 6. 22.
- 주요시설

| 구분 | 주요시설 |
|------|-------------------------------|
| 지상3층 | 사무실, 휴게실 |
| 지상2층 | 대강당, 실습교육장 |
| 지상1층 | 노노카페, 안내실, 창고, (작은도서관), 지상주차장 |
| 지하1층 | 주차장, 기계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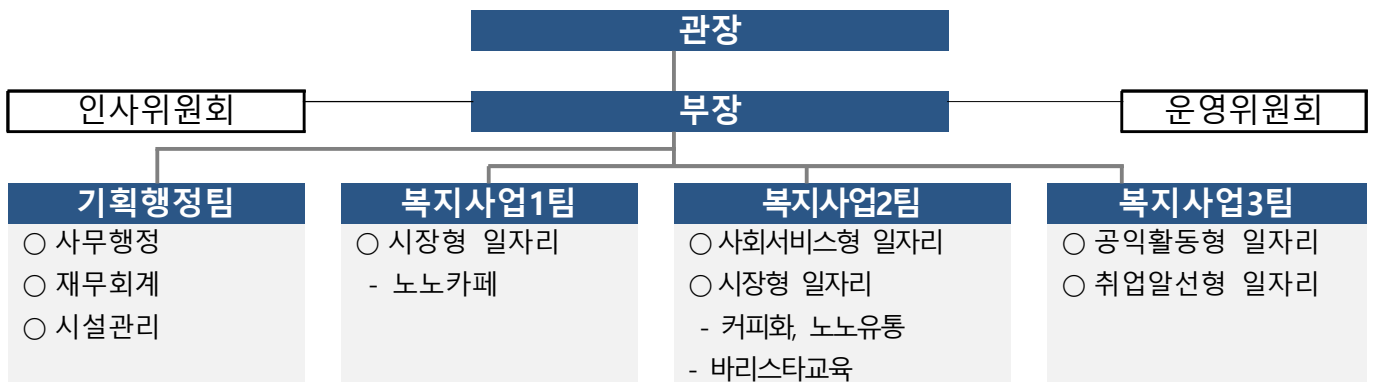
○ 기타 작업장

- 커피화 작업장: 봉담읍 분천리 76-21, 227㎡ (임차)
- 콜드브루제작소(바리스타교육 사업단) 작업장: 봉담읍 분천리 76-21, 227㎡ (임차)
- 노노유통 작업장: 봉담읍 분천리 36, 114㎡ (임차)
- 노노카페 매장: 화성시청점 등 47개소

○ 주요 시설 및 건물 전경(위치도)



○ 조직도



○ 직책(종)별 종사자 현황

(2022. 3. 1.기준)

| 총원 (명) | 정규직 | | | | | | | 계약직 | |
|-----------|-----|----|----|---------|----|-----------|-----|-----------|---------------|
| | 소계 | 관장 | 부장 | 선임사회복지사 | | 사회 복지사 | 사무직 | 시설 관리직 |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
| | | | | 팀장 | 대리 | | | | |
| 28 | 14 | 1 | 1 | 3 | 2 | 5 | 1 | 1 | 14 |

다. 민간위탁기간: 2022.9.1. ~ 2027.8.31.(5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선정방법: 수탁법인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 구성(외부 위원 과반 이상)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문가(학계, 현장전문가), 해당 공무원 등
 - 심사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최고 득점 신청자가 사업운영능력 부족 시 제외
 - 심사기준

-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선정기준 필수사항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 분포,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평가한 경우에 한함), 법인의 정관(수탁하고자 하는 시설과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심사기준 항목
 - 별도 사무실, 강의실(모임 및 강의), 작업장 확보 여부
 - 사업프로그램기관 운영 목적취지와 적합성 여부, 기존 사업과의 독립성·중복성 여부, 사업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특성에의 적합성(물품의 제작판매, 유통 등) 여부, 사업의 구체성 및 중장기적으로 체계적 전망 가능성 여부 등
 - 지자체와 지역사회자원과의 연대 가능성(사업에 대한 의지 및 사업운영 방향)
 - 관장 내정자: 3년 이상 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포함) 근무 경력자

마.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바. 기타 사항

- 지원사항: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및 자산구입비 일체
- 향후계획
 - 2022. 4.: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표 확정
 - 2022. 4. ~ 5.: 수탁자 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022. 6.: 위수탁협약(계약) 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2. 8.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위탁사무로는 노일일자리 개발지원 등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사업,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임.
- 검토결과,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령화 등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민간위탁 심사기준 및 위탁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구체적인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노인복지과장 지 현)

가. 제안이유

-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지원항목 추가 및 기준 명확화 (안 별표 1 제1호 및 비고란).
-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에서 주민복지사업 지원항목 추가(안 별표 1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주민지원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 집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마을발전지원의 종류에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의 지원항목 추가 및 기준을 명확히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농업시설 설치 및 관광산업으로 이루어진 마을발전지원의 소득증대 사업에 수요가 높은 소형 화물자동차 구입비 추가 및 주민복지사업 중 의료비 지원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가 추가되어,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노인복지과장 지 현)

가. 제안이유

- 조례 제정 이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시설명 확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2호).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화장료 감면(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 골분의 봉안기준 보완(안 제15조제2항 신설).
- 자연장지 사용 기준 보완(안 제17조제4항 신설).
- 사용 자격 기준 구체화(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 이후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원활한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종 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시설명 확정에 따른 조문 정비, 장기등 기증자 및 조직기증자 화장료 감면과 골분의 봉안 및 자연장지 사용 기준 보완 등에 관한 사항임.
-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개정을 통하여, 봉안 및 각종 사용 자격 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명확화됨에 따라,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 감소 및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자구정정〉- 별표 2에 신설되는 란 표의 선 삭제 및 외곽선 굵기 변경

- 원안

| | |
|--|-------|
|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 제한 없음 |
|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 해당 없음 |

- 수정안

| | |
|--|-------|
|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 제한 없음 |
| 사망일 기준 모 또는 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자 | 해당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보육과장 신순정)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연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위탁시설명: 다함께돌봄(늘봄이음터)센터(가칭)
- 위 치: 화성시 동탄대로 24길 49
- 시설연면적: 138㎡(다함께돌봄 전용면적)

나.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 상담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동돌봄 관련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2. 8. ~ 2027. 8. (계약일로 부터 5년)
- 위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위탁운영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무상사용
- 지원예산: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소요예산액: 135,772천원

- 시설비(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70,000천원
- 인건비 53,772천원(4,595천원*12개월)
- 운영비 12,000천원(1,000천원*12개월)

라. 조직 및 시설구성

○ 조직운영

- 인력기준: 2명 (센터장 1인, 돌봄 교사 1인)

○ 시설구성: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탕비실, 상담실, 취사공간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업자 공모
- 2022. 7.: 사업위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 2022. 8.: 이용자 모집 및 센터 개소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될 다함께돌봄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에 따라, 더욱 효과적으로 지역돌봄 수요 충족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되나, 돌봄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과 지역별 격차 해소 등 기존에 운영 중인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 03. 17.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03. 18.

다. 상 정 일 자 : 제21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2022. 03. 30.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아동보육과장 신순정)

가. 제안이유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권역별·연차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등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현황

- 위탁시설명: 다함께돌봄(호연이음터)센터
- 위 치: 화성시 동탄대로 3길 17-9
- 시설연면적: 183㎡(다함께돌봄 전용면적)

나. 위탁사무

-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의 상담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 및 아동돌봄 관련하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 위탁계획

- 위탁기간: 2022. 8. ~ 2027. 8. (계약일로 부터 5년)
- 위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 위탁기준 및 선정방법

-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탁자와는 위탁내용 및 의무, 예산지원액 등에 관하여 협약서 작성, 교환
※ 위·수탁 조건 위반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위탁취소 가능

○ 위탁운영원칙

- 토지 및 건물사용 : 무상사용
- 지원예산 :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 소요예산액: 135,772천원

- 시설비(리모델링) 및 자산취득비 70,000천원
- 인건비 53,772천원(4,595천원*12개월)
- 운영비 12,000천원(1,000천원*12개월)

라. 조직 및 시설구성

○ 조직운영

- 인력기준: 2명 (센터장 1인, 돌봄 교사 1인)

○ 시설구성: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탕비실, 상담실, 취사공간

마. 향후 추진계획

- 2022. 6.: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업자 공모
- 2022. 7.: 사업위탁 계약 체결 및 리모델링 공사
- 2022. 8.: 이용자 모집 및 센터 개소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황당연)

-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 수요가 높은 동탄2신도시에 지역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다함께돌봄 체계 구축과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돌봄센터 운영을 통해서 초등학생 보호자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고,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